

인천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가단30664 판결 [이득상환금]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진(소송구조)

변론 종결 2019. 3. 20.

판결 선고 2019. 4.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21.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 21.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2.

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피고로부터 수취인을 원고로 하여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 2009. 4. 17., 지급기일 2009. 10. 20.인 약속어음, 액면금 40,000,000원, 발행일 2009. 7. 20., 지급기일 2010. 1. 20.인 약속어음,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09. 8. 10., 지급기일 2010. 2. 10.인 약속어음을 각 발행받았다(이하 위 각 약속어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

나.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약속어음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권리가 소멸함으로써 그 발행인인 C과 피고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액면금 상당을 이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원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인바,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더라도 발행인에 대하여는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되거나 배서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이치는 그 원인관계상의 채권또한 시효 등의 원인으로 소멸되고 그 시기가 어음채무의 소멸 시기 이전이든지 이후이든지 관계없이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다10376 판결, 대법원1993. 7. 13. 선고 93다10897판결, 대법원 1963. 5. 15. 선고 63다15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D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발행일경에 그 액면금 상당액을 빌려 주면서 그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C과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므로 C과 피고는 주식회사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보증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41599호로 위 대여금 중 잔존대여금인 4,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2018. 10. 10. C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에 대하여는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형태로 신용을 공여한 것을 넘어 보증의 형태로 신용을 공여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보증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채권도 상사채권으로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보증의 형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원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발행인인 피고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용래